

[일련번호 : 1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자치회관 강사 위촉사항 미보고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○○동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○○동은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 조례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회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동장은 강사를 위·해촉할 경우에는 위·해촉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○○동은 감사 대상기간동안 자치회관 강사 위촉사항을 구청장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.

[표] 자치회관 강사 위촉사항 보고 현황

연번	연도별	지적사항
1	2023년	- 강사 위촉사항 미보고 (***, 23.12.)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○○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○○동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회 운영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